미국

TickBox가 유니버설과 넷플릭스 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 종결을 위해 2,500만 달러 손해배상 지불에 동의

박형옥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과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이 TickBox가 영화와 TV쇼 등의 불법 온라인 콘텐츠에 고객들이 무단으로 액세스하여 제한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TickBox TV 장치를 판매한 것에 대해 저작권 기여침해와 유도침해를 주장하며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2018년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TickBox에게 영구적 금지명령과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사실 관계

○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Disney Enterprises, Twentieth Century Fox Film, Amazon Content Services, Netflix Studios 등(총칭하여 "원고들"이라함)은 영화 및 TV프로그램을 제작하여 (a) 극장 상영; (b) 케이블 및 위성 서비스; (c) 인터넷 VOD (주문형) 서비스; (d) 가정용 DVD 및 Blu-ray 디스크 판매; (e) 텔레비전 방송 등 다양한 형식 과 유통 채널을 통해 원고들의 저작물을 배포 및 공연 하고 있음.

○ TickBox TV LLC(이하"피고"라함)는 조지아 주를 주사업장으로 하는 스트리밍 TV 장치 제조업체로서 고객들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TV쇼 및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에 액세스하여 무제한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TickBox TV 장치를 판매하고 있음. 또한 www.tickboxtv.com 웹사이트를 통해 라이브 채팅과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TickBox TV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음.

○ TickBox TV는 동영상파일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Kodi"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미디어플레이어[<1>]와 "Addon"이라는 제3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이 원고들의 저작물에 무단으로 액세스하여 영화나 TV쇼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임. 특히"Covenant"는 가장 인기 있는 "Addon"으로서 홈 스크린에 "Box Office","New Movies"등 15가지의 다른 카테고리와 검색 옵션을 제공하며 고객이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1> 크리에이터들이 Kodi의 소스 코드를 발행하면 제3자 프로그래머들이 그것을 수정할 수 있고 그들만의 버전을 창작할 수 있다.

스트리밍할 특정 제목(예를들어 'War for the Planet of the Apes'같은)을 클릭하면 해당 콘텐츠가 스트리밍 되도록 해주는 40개 이상의 무단 소스에 액세스 할 수 있음. 따라서 TickBox TV 장치를 이용하는 고객은 영화관에서만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스트리밍 해주는 서비스에 불법으로 액세스 할 수 있음.

사건 경과

○ 2017년 10월 13일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영화와 TV쇼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구로 TickBox TV를 판매하고 이용자가 불법저작물에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이며 고의적인 기여침해와 의도적인 유도침해라고 주장하며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이하'법원'이라함)에 제기함.[<2>]

○ 2017년 12월 7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년 2월 13일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업데이트를 할 것과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pp이나 Add on을 24시간 이내에 제거해야한다는 등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림.

○ 2018년 9월 12일 법원은 피고들의 기여침해와 유도침해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과 2,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내림.[<3>]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의도적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유도침해와 저작권의 기여침해 주장에 대하여, (1)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의 소유, (2) 저작권법 제106조에 근거하여 저작권 소유자에게 부여된 적어도 하나의 배타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의 유도침해와 기여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원고들이 의존한 Fung 사건[<4>]에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한 Grokster의 유도이론[<5>]의 4가지 구성요소[<6>] 를 본 사건에

<2>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LP et al v. TickBox TV LLC, No. 2:17-cv-07496-MWF(AS), (C.D.Cal.Oct 13,2017).

<3>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LP et al v. TickBox TV LLC, No. 2:17-cv-07496-MWF(AS), (C.D.Cal. Sep 12,2018).

<4>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v. Fung, 710 F.3d 1020 (2013).

<5>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6> "(1) the distribution of a device or product [by the defendant], (2) acts of infringement [by third parties], (3) an object [of the defendant] of promoting [the device's or product's] use to infringe copyright, and (4) causation."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 (1) 피고에 의한 장치나 제품의 배포: 피고의 장치의 배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피고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법원은 판단함.
- (2) 제3자에 의한 침해의 행위: 법원은 피고가 단지 고객들에게 장치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3자의 Themes<7>을 사전에 장치에 함께 탑재하여 제공했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가 고객들에게 제3자의 Themes을 설치하도록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문구를 장치 홈 스크린의 옵션에 추가했다고 판단함.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제3자와 피고의 고객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3) 저작권 침해를 위한 장치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들 : 법원은 고객들이 장치를 통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시청각 콘텐츠에 무제한 액세스하여 영화나 TV쇼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피고가 적극 광고했다고 판단하며, 또한 피고가 고객들이 제3자의 Themes을 사용하도록 조언하는 광고를 하고 장치사용을 위한 고객지원도 했다고 판단함. 그리고 침해물에 대한 필터링 방법의 부족은 침해에 대한 피고의 의도적인 촉진을 강조한다고 판단함.
- (4) 인과 : 법원은 피고가 장치를 통해 제3자의 시청자들과 침해의 범위를 넓혔으며, 장치가 없을 때 발생하지 않았을 침해 사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법원은 위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의 기여침해를 인정하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위한 본안의 승소가능성을 원고들이 증명했다고 판단함.

○ 법원은 다음으로 원고들이 예비적 금지명령의 부재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겪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판단함.

○ 법원은 금지명령 구제를 승인하거나 보류했을 때 당사자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함.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가 장치를 완전히 배포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객의 장치를 “해킹”하도록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힘. 그러나 법원은 (1) 피고가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고들 저작물의 승인되지 않은 버전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Themes”이 사전 탑재 된 장치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며; (2) 피고가 이미 배포한 모든 장치들로부터 “Themes”를 제거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해야한다고 밝힘.

<7> 테마(themes)는 빌드(builds)라고도 불리며 사용자에게 영화 및 TV 제목 목록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다양한 인터넷 링크 소스에서 선택된 제목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해주는 “streaming” addons을 포함하여 Kodi addons의 번들(bundle)이 포함되어 있다. :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LP et al v. TickBox TV LLC, No. 2:17-cv-07496-MWF(ASx), 2018 WL 1568698 at *4 (C.D.Cal. Jan 30,2018).

○ 마지막으로 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의 발행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결론을 내림. 그러면서 법원의 금지명령은 피고가 장치를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피고가 장치를 현재 양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힘. 즉, 원고들의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의 승인되지 않은 버전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는 "Themes"이 사전에 탑재된 것을 금지한다고 함. 따라서 법원은 장치가 비침해용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 대중은 계속해서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소장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소장에 언급된 "Themes"를 다운로드하게 해주는 링크들을 삭제하는 단계를 취하여 장치의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Themes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금지명령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발적인 중단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2018년 2월 13일 법원은 원고들이 예비적 금지명령을 위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였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2018년 9월 12일 법원은 피고들인 TickBox와 Jeffrey Goldstein이 공동으로, 개별적으로 총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림.

평가 및 전망

○ 피고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은 불법적인 온라인침해로부터 합법적인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를 강화하고 전세계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결국에는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이번 금지명령은 피고가 장치를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고들의 콘텐츠에 불법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장치의 배포를 금지하는 명령임.

○ 피고의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링크를 직접 클릭하였다면, 고객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의 직접 연결을 촉진하고 활성화 하는 물리적 장치를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기여침해와 유도침해가 인정되는 행위임을 확인시켜준 사건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IRvAvP
https://lat.ms/2Oe7SMf
https://bit.ly/2CGkOZk
https://bit.ly/2CLZVwE

TV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TickBox TV 장치
이미지출처: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LP et al v. TickBox TV LLC, No. 2:17-cv-07496-MWF(AS), (C.D.Cal.Jan 3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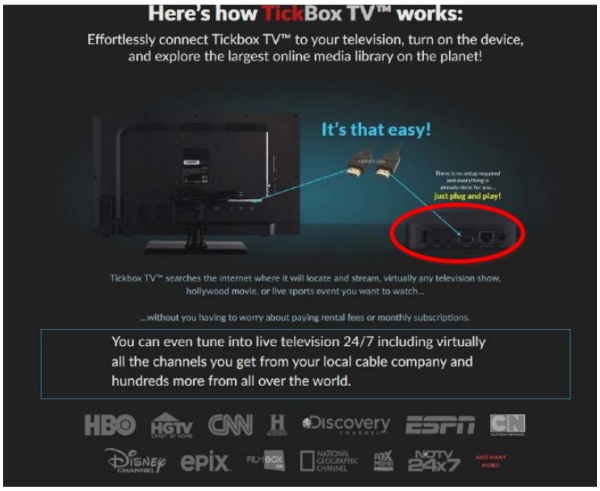

TickBox의 광고
(Complaint ¶ 25; Klaus Decl., Ex.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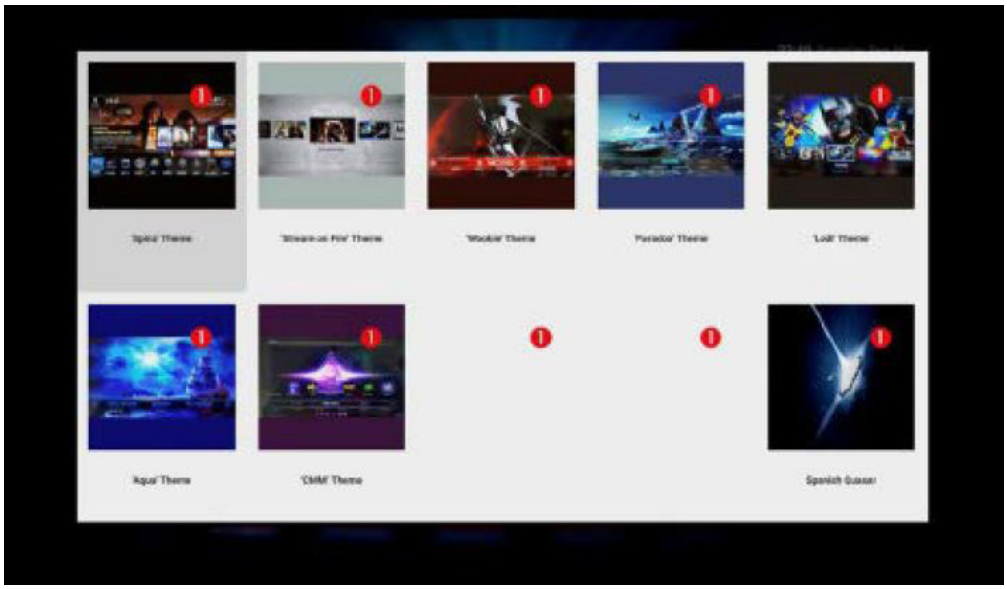

Themes
이미지출처: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LP et al v. TickBox TV LLC, No. 2:17-cv-07496-MWF(AS), (C.D.Cal.Jan 3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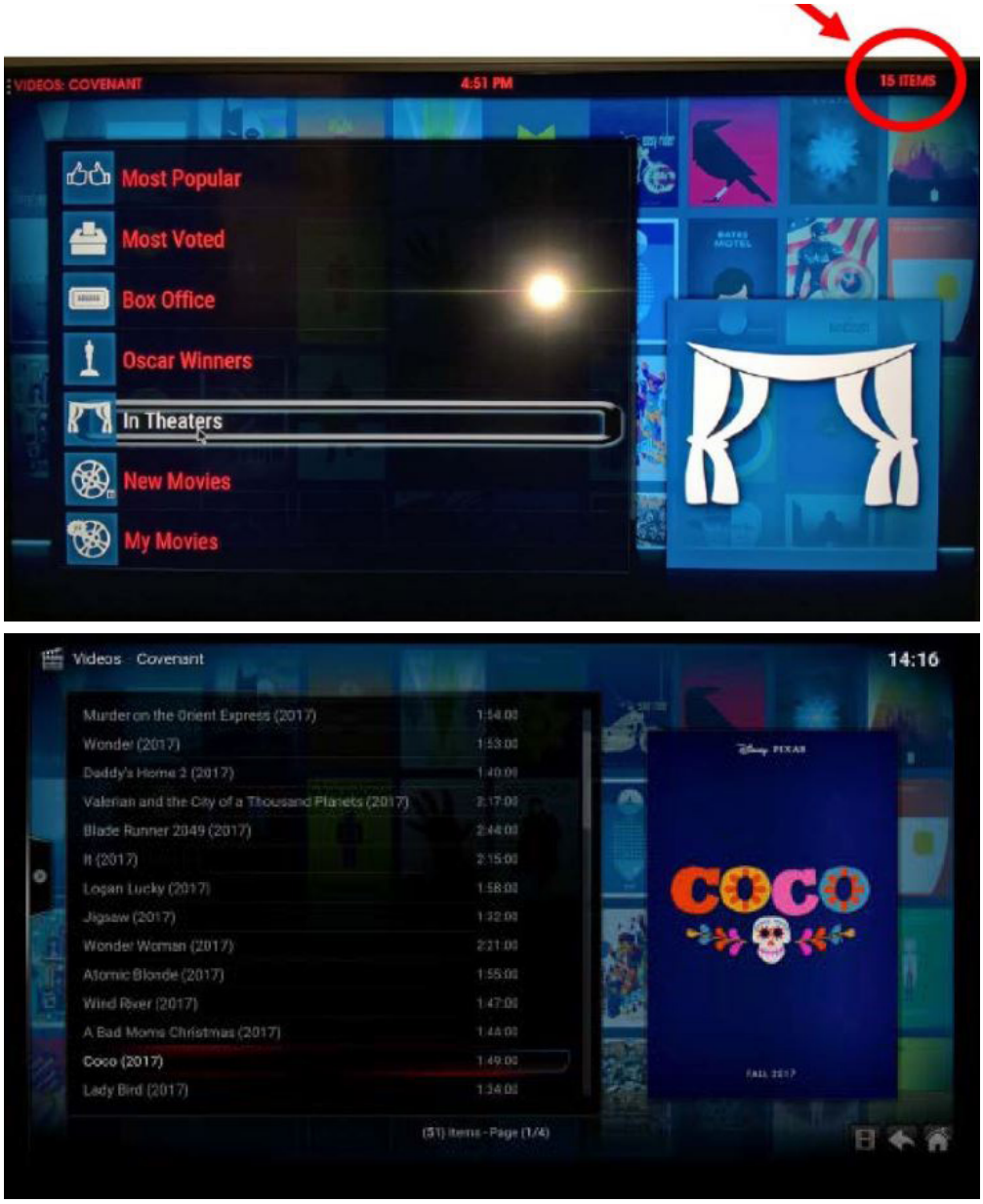

"Covenant" addon
이미지출처: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LP et al v. TickBox TV LLC, No. 2:17-cv-07496-MWF(AS), (C.D.Cal.Jan 30,2018).

독일

연방의회,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연방의회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을 이행하기 위한 EU 지침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법으로 이행함으로써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함.

입법 목적

○ 지금까지 맹인, 시력장애자 또는 기타 읽기(판독) 장애를 가진 자(이하 '독서장애인'이라 함)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도서나 기타 인쇄된 텍스트와 자료에 접근하는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독서장애인은 문학, 학술, 예술 분야에서 출판된 전체 저작물의 5%만 접근하고 있음. 독서장애인은 나머지 저작물들을 접근할 수 있는 형태(예를 들어 점자, 큰활자 인쇄물, 오디오북 등)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독일에서는 155,000명의 맹인과 500,000명의 시력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 이러한 상황은 독서장애인에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참여를 현저하게 제한시키고 있음.

○ 이들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 있다면, 독서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동의나 법률상 허락이 필요함.

입법 배경으로서 WIPO의 마라케시 조약과 EU 지침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2013년 6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인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을 채택함. 마라케시 조약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2013년 6월 27일 서명되어 2016년 9월 30일 발효되었고 2017년 10월 현재 33개국이 인준한 다자조약으로서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최초의 국제조약임.[<1>]

<1>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to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 EU는 2014년 4월 30일 이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EU 마라케시 지침 2017/1564'[<2>]과 'EU 마라케시 규칙 2017/1563'[<3>]을 통해서 이 조약을 이행함.[<4>] EU 마라케시 지침은 EU의 저작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8년 10월 11일까지 독일법으로 이행되어야 했음. EU 규칙 2017/1563은 EU 회원국과 제삼국 사이의 법률거래에 관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 이미 이행되어 있어서 추가 이행이 필요하지 않았음.

개정 저작권법 개관

○ 연방의회는 2018년 10월 11일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함.

○ 현행 저작권법은 장애인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일반규정(제45a조)을 두고 있음.

- 제45a조에 따르면 기존의 이용가능한 감각적 인지 방법으로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장애로 인하여 가능하지 않거나 현저히 곤란한 장애인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나 이의 배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보상금 청구권은 관리단체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복제 및 배포권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45a조에 제45b조(독서장애인), 제45c조(권한 기관, 보상청구, 법규명령제정권), 제45d조(법률상 허용된 이용 및 계약상 이용권한)의 특별규정이 추가됨.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독서장애인의 권한(개정안 제45b조).

- 독서장애인이란 맹인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로 시력 보완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어문저작물을 쉽게 읽을 수 없는 자를 말함.

- 독서장애인은 자신이 이용할 목적으로 텍스트 또는 오디오 형태로 공표된 저작물이나 음악의 악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를 복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제하게

<2> 독서장애인을 위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저작물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그 밖의 보호대상의 허용된 이용 형태 및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이 개정에 관한 지침(EU 2017/1564)(Official Journal of the EU L 242 on 20.9.2017, p.1 – Marrakesh Directive).

<3> 독서장애인을 위해서 EU와 제삼국 사이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의 복제물의 국경간 교환에 관한 규칙(EU 2017/1563)(Official Journal of the EU L 242 on 20.9.2017, p.1 – Marrakesh Regulation).

<4>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참조.

할 권한을 가짐(복제권). 이러한 권한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삽화도 포함함. 하지만 독서장애인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만 복제물로 제작할 수 있음.

○ 공인기관의 권한, 보상청구권, 법규명령제정권한(제45c조).

- 공인기관이란 공익적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독서장애인이 방해를 받지 않고 읽기 및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기관을 말함(예를 들어 독서장애인 도서관, 독서장애인 학교, 독서장애인 의료센터, 대학의 독서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센터 등).
- 공인기관은 텍스트 또는 오디오 형태로 된 공표된 어문저작물 및 음악의 악보를 독서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복제할 수 있음(복제권). 공인 기관의 권한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삽화도 포함하지만 독서장애인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만 복제물로 제작할 수 있음.
- 공인기관은 이렇게 제작된 복제품을 독서장애인 또는 다른 공인 기관에 대여하거나 배포할 수 있고 공중에 접근시키거나 공중에게 전달할 수도 있음(대여권, 배포권, 공중접근권, 공중전달(재현)권).
- 공인기관의 이용행위에 대해서 저작자는 적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관리단체가 이 청구권을 행사함(보상청구권).
- 법무부장관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공인기관의 의무와 관련하여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짐(법규명령제정권). 즉 법규명령을 통하여 저작물 이용행위와 관련한 공인기관의 의무, 공인기관의 특허 및 상표청에 대한 신고의무, 공인기관의 의무에 대한 특허 및 상표청의 감독 등.

○ 법률상 허용된 이용과 계약상 이용권한(제45d조).

- 권리자는 제45b조와 제45c조에 따라서 허용된 이용을 이용권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합의를 할 수 없음.

○ 저작물 변경 금지의 예외(제62조 제3항).

-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권자는 저작물을 변경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인정됨(제62조 제1항). 즉 제45a조 내지 제45c조의 이용의 경우 독서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변경이 허용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제한(제87c조 제3항).

- 개정안 제45b조 내지 제45d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제한에도 준용됨.

○ 독서장애인 또는 공인기관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제한(제95b조).

- 권리보유자가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독서장애인이나 공인기관이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에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한 이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함(제95b조 제1항).

-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대상이 계약상 약정에 기초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한 장소 및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케 되는 경우에도 독서장애인이나 공인기관에게 접근을 허용해야 함(제95b조 제3항).

평가 및 전망

○ 독서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저작물들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될 수 있어서 독서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독서장애인협회(DBSV)는 개정안이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특히 보상의무와 공인기관의 활동과 관련한 의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CLl21m
https://bit.ly/2ROjnfv
https://bit.ly/2Ab9C49

이탈리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다.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이탈리아는 공공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디지털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규칙을 제정함. 이 규칙은 유럽 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 기여하고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그러나 배포와 복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어느 정도까지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용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이탈리아는 디지털 관련 안건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1]를 발족함. AgID에서 제정되는 규칙은 반드시 세 가지 목표를 완수하여야 함. 1) 공공 서비스의 품질, 보안, 탄력성, 에너지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에서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개선할 것, 2)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이용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것, 3) 데이터 자원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 것.

○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탈리아의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자료, 즉 데이터와 저작물에 대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 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서버 위치에 대한 행정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지적재산권법을 (저작권법) 포함한 국가 및 지역 관련법을 적용하여 해당 데이터의 적법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과 이동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AP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정부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반드시 호환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과 이동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짐. 특히 저작권법 측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소프트웨어에 저작물의 상호 운용성과 휴대성을 제한하는 기술이 있어서는 안 됨.

<1> AgID Agenzia per I'ltalia Digitale, Digital Italy Agency.

○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배포 혹은 복제가 될 수 있는 범위는 EU 사법재판소의 컴퓨터 프로그램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2] 제4조 제2항의 해석을 따름. 동 조항의 해석을 청구한 독일 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3]에서 EU 사법재판소는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판매와 마찬가지로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4]. 따라서 클라우드 이용자들은 해당 저작물이 이미 최초판매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을 배포 혹은 복제할 수 있음.

평가 및 전망

○ 데이터의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유럽연합의 목표인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 요소로 고려되어 왔음.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이나 유럽연합 사이버보안 시행안 (the EU Cybersecurity Strategy)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자 함. 이런 추세를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칙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음.

○ 그러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에 대해 과연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음.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 판매에도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선결 판결과 달리, 다운로드한 콘텐츠는 재판매할 수 없다는 독일 고등법원의 판결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복제물의 재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EU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5]도 존재함.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들의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의 도래는 늦춰질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B6kYZT
http://www.gazzettaufficiale.it/eli/%20gu/2018/04/20/92/sg/pdf.
http://copyrightblog.kluweriplaw.com/2018/09/15/italy-adopts-first-rules-cloud-service-providers-possible-next-steps-including-eu-level/

<2>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3> C-128/11, UsedSoft GmbH vs. Oracle International.
<4> 단,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시간적 제한이 없어야 하고, 판매 후 첫 번째 취득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저작물 삭제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아야 함.
<5> C-166/15,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9ea7d2dc30d59bdd08c68ee64be4bdacd181a7240df3.e34KaxiLc3qMb40Rch0SaxyKahj0?text=&docid=184446&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1118105.

프랑스

파훼원, '고정'은 그 대상이 되는 저작물 혹은 실연물이 공중에 전파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박성진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과정,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2018년 9월 12일, 프랑스 파훼원은, 공중에게 전파될 수 있는 수준의 최종본을 유형물에 녹음하여 고착한 것뿐만이 아니라, 연습수준으로 실연한 것을 녹음한 것 역시 '고정'된 것이라고 판시함. 또한 비록 음이 포함되었더라도, 영상은 음악출판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계속 출판할 의무'의 주된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대신 음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A는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임.

○ 이 사건의 피고는 음악출판<1> 및 프로덕션 업을 행하는 법인임.

○ A는 피고와 그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녹음(enregistrement) 계약 및 출판계약을 맺음.

○ 이후 1981년 12월 3일, A는 그의 처인 B와 이혼하게 되는데, 이때 A의 저작물 및 실연물의 이용료는 부부 공동재산(anquêt de communauté)으로서 분류됨.

- 이로 인해 A가 1975년 10월 16일부터 1981년 5월 15일 사이에 실연한 음의 녹음물을 이용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용료 전액이 B에게 귀속되게 됨.
- 그리고 B는 자신이 A의 저작물 및 실연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함.

○ A는 1986년 6월 1일 사망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그의 두 아들이 A의 피상속인들이 됨.

○ 따라서 1975년 10월 16일부터 1981년 5월 15일 사이의 녹음물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되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권리는 A의 두 아들들에게 귀속됨.

○ 피고와의 계약으로써 녹음 및 발매한 녹음물 C에는 그가 연습형식으로 실연한 음악저작물(sketches)이 수록되어 있고, 이 녹음물 C는 큰 성공을 거둠.

<1> CPI 제13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출판계약(contrat d'édition)'이라 함은, 저작물의 견본품(exemplaire)을 수개 제작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비단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도 출판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의 원고인 A의 피상속인들과 전처 B는, 피고가 녹음물 C는 1975년 10월 16일 이전에 녹음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권리는 A의 피상속인들에게 있는데, 피고가 그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다른 한편, SACEM<2> 자료에 따르면 여타기간과 비교해보았을 때, 1993년부터 1996년 상반기까지 A의 저작물의 판매량이 현저히 저조함.

○ 이 점에 대해서, 원고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이하 CPI) 제132-12조에 피고는 출판사로서 A의 저작물을 계속 출판(exploitation)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함.

- 이는 피고가 여타 기간에 비해서 해당 기간 동안 A 저작물을 적게 제작하였으며, 광고 역시 부진하게 행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이 조문에서 피고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함.

이 사건의 쟁점

○ 첫째, '고정(fixation)'의 의미.

- CPI 제212-3조에 따르면, 실연을 1)고정, 2)복제, 3)공중에게 전달, 그리고 4)음과 소리가 동시에 고정된 경우 음과 소리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실연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CPI가 규정하고 있는 실연자의 저작재산권 중 하나임.
- 따라서 만약 녹음물 C의 제작이, 단순한 '녹음'인지 혹은 '고정'인지 여부가 문제가 됨.
- 그리고 설령 '고정'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1975년 10월 16일부터 1981년 5월 15일 사이에 행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피고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됨.

○ 둘째, CPI 제132-12조가 규정하는 피고의 의무 이행방식.

- 출판사는 영구적(permanente)이고 계속적(suivie)으로 저작물을 계속 출판할 의무 및 전문적인 목적에 따라(conformément aux usages de la profession)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전파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함.
- 이때 음악출판사의 경우, 음악저작물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과 같이 그래픽적인 방식으로도 음악 저작물을 계속 출판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조문이 뜻하는 '계속 출판할 의무'의 방식이 그래픽적인 방식으로써의 출판도 포함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2>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작곡가 및 출판사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프랑스의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 (Société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de musique의 줄임).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는 '고정'이란, 공중에게 전파(diffuser)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고착(figer)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주장함.

- 이러한 경우, 음악저작물을 녹음한 최초의 녹음본에서, 그에 존재하는 결점들을 제거함으로써 공중에게 전파될 수 있는 수준에 최종 음악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착시키는 행위만이 고정에 해당함.
- 그런데 녹음물 C에 수록된 음악저작물들은 최종본이 아닌, A가 연습의 일환으로써 실연한 것의 '녹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반면 원고는, 고정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고착화되는 대상이 창작물의 실연에 대한 것인지 여부라고 주장함.

- 따라서, 최종본의 제작 여부나 실연을 물질화(matérialisation)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개념이 아님.
- 덧붙여 로마협약 제3조 제b항에서 음반을 "모든 고정(toute fixation) […]"으로 정의하고 있고, 1996년 WIPO 실연·음반 조약 제2조 제c항에서 '고정'을, 소리나 공연(représenation)을 감지(percevoir), 복제(reproduire) 및 전달(communiquer)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에 구체화(incorporation)하는 것으로 규정함.
- 국제조약의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종본만을 고정으로 볼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 한편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원고는 해당 조문은 청각적인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계속 출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물론 출판사가 녹음물 및 음악저작물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출판한 경우에도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부차적인 출판행위에 그침.
- 따라서 그래픽적 방법으로 A의 저작물을 출판한 피고의 행위는 해당 조문이 규정하는 출판행위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대해서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그래픽적인 방법으로 A의 저작물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해당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항변함.

하급심의 판단

○ 2017년 2월 14일, 파리 항소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고정'이란 저작물 및 실연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함.

- 이는 단순히 소리를 포착(captation)하는 수준의 녹음은 '고정'에 해당하지 않고, 복수의 복제물로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최종 저작물 및 실연물을 고착시킨 것만이 고정에 해당함.
- 따라서 녹음물 C에 수록된 A의 저작물 및 실연물은 고정된 것이 아님.

○ 한편,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A의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계속적 이용 의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저작물의 그래픽적인 출판 역시 피고가 이 의무를 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인용함.

파훼원의 판결

○ 2018년 9월 12일 파훼원[<3>]은 먼저, '고정'이란 매체에 실연자의 실연(prestation)을 최초로 결합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함.

○ 파훼원은, 최종본의 제작만을 고정으로 보았던 하급심의 판결은 법률의 규정을 곡해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A의 실연이 최초로 녹음된 때부터 고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시한 것임.

○ 이어서 이 법원은 청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A의 저작물을 출판한 피고의 행위는, CPI 제132-12조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출판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함.

- 파훼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일차적인 출판행위 없이 행해진 A저작물의 부차적인 출판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http://bit.ly/2PmQrd0
http://bit.ly/2ILGjYL
http://bit.ly/2CwwjCm
http://bit.ly/2ChsuQq
http://bit.ly/2QQ8jNU
http://bit.ly/2PCqczj

<3> Cour de cassation Première chambre civile 12 septembre 2018 N° 17-19.490 Cassation partielle.

호주

홍콩 TV 방송사, 셋톱박스(set-top boxes)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청한 소송에서 승소하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홍콩이 TRIPS 협정에는 가입한 반면 로마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홍콩의 주요 방송사인 Television Broadcasts Limited의 방송콘텐츠 중 일부가 호주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호주 연방 법원은 호주 내 ISPs들과 자회사들에게 7개의 비인증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연결된 25개의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음.

개요

○ 홍콩의 주요 무료 방송사(free-to-air broadcaster)인 Television Broadcasts Limited(이하 'TVB')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 방송국(television station) 중에 하나로서 2018년 초에 호주 법원에 불법 IPTV 서비스(unauthorized IPTV services)에 대한 차단 명령(blocking injunction)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TVB의 법무 및 국제 영업부 차장(deputy general manager of legal and international operations)인 Desmond Chan은 셋톱박스, 앱, 웹 등으로 인해 널리 배포되고 있는 불법 복제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TVB에게 매년 수 억 홍콩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함.

○ 또한 Desmond Chan은 불법 복제 콘텐츠들이 TVB의 B2C(business-to-customer) 비즈니스 제공 부문과 TVB의 합법적인 셋톱박스 Anywhere의 영업은 물론 TVB의 라이선스 파트너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TVB의 B2B(business-to-business) 비즈니스 부문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함.

○ 2018년 9월 20일 호주 연방법원은 호주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s, 이하 'ISP')들에 대해 사이트 차단(site-blocking) 명령을 부과하였음.

- 호주 연방 법원은 이와 함께 호주의 주요 ISP들에게 셋톱박스(set-top boxes)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명령하였음.

- 법원은 Telstra, Optus, Vocus, TPG를 포함한 호주의 통신업체들에게 TVB의 저작권 콘텐츠(copyright content)를 무단 스트리밍 하는데 사용하는 불법 셋톱박스와 장치들을 15일 이내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음.

판결의 쟁점과 주요 내용

○ TVB는 저작권법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에 Telstra, Optus, Vocus, TPG plus를 포함하는 호주 내 ISPs들과 그들의 자회사들에게 A1, BlueTV, EVPAD, FunTV, MoonBox, Unblock, hTV5으로 명명된 7개의 Android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요청하였음.

○ TVB의 요청은 ISPs 서비스의 기술적 운영과 관련된 URL, 도메인, IP 주소 등에 대한 차단뿐만 아니라 앱을 호스팅하는 Google Play와 Apple의 App Store 등과 같은 호스팅 플랫폼(hosting platforms)에 대해서도 차단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대해 John Nicholas 판사는 지난 5월 TVB의 요청이 비교적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판결을 수개월 연기한 바 있음.

○ 이번 판결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홍콩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는 가입한 반면 1961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1961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TVB의 콘텐츠 중 일부가 호주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었음.

○ 연방 법원의 John Nicholas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스트리밍 셋톱박스(illicit streaming set-top boxes)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 무단으로 콘텐츠를 호주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후, TVB의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많은 일반 시청자들은 그들이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John Nicholas 판사는 불법 IPTV 등의 서비스 운영자들은 보통 해외에 “거의 확실한(almost certainly)” 기반을 두고 있어 이를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TVB가 법원에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평가 및 전망

○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의 TVB의 승소가 처음은 아니고 2015년에 China Central Television을 포함한 다른 방송사들과 함께 미국의 셋톱 박스 TVpad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고소한 사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TVpad는 TVB와 다른 방송사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불법 재전송(illicit retransmission)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음.

○ TVB는 현재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불법 복제 및 스트리밍 웹 사이트를 차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도 호주와 유사한 사이트 차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홍콩 정부와 계속 접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 참고 자료

https://bit.ly/2Qtq0Cp
https://bit.ly/2IA7ohm
https://bit.ly/2IAVq7j